|  |  |  |
| --- | --- | --- |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적용****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법석〔2013〕22호，2013년 9월 12일《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 심판 이행 과정을 고려하여 인민법원이 수리한 기업파산 안건 중 채무자의 재산 인정 관련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채무자의 소유인 화폐, 현물 이외에 채무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고 있는, 화폐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등 재산과 재산 권익에 대해 인민법원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한 재산은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채무자가 저장, 보관, 도급, 대리판매, 차용, 위탁보관, 임대 등의 계약 또는 기타 법률 관계에 기하여 점유 및 사용하는 타인의 재산（2）채무자가 소유권 유보 매매중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재산(3）소유권이 국가에 전속되어 있으며 또한 양도 불가한 재산 　　(4）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기타 재산. **제3조** 채무자가 법에 따라 담보 물권을 설정한 특정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채무자의 특정재산 중 담보 물권 소멸 또는 담보 물권 실행 이후의 남은 부분은 파산 절차 중에서 파산비용, 공익채무, 기타 파산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채무자가 안분 방식으로 소유권을 향유하는 공유재산 또는 소유권을 공동 향유하는 공유재산에 상응한 재산 권리 및 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분할하여 획득하는 소득 부분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모두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채무자 파산 청산 선고는 공유재산 분할의 법정사유에 속한다.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정리절차 또는 화해를 판결한 경우 공유재산의 분할은 응당 물권법 제99조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정리절차 또는 화해의 수요에 따라 반드시 공유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관리인이 분할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공유재산 분할로 인하여 기타 공유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기타 공유자가 공익채무 변제를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5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 재산 관련 집행 절차가 기업파산법 제19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중지될 경우, 집행 조치를 취하는 관련 단위는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복권 조치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6조**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이익관계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영향 준 경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전부 또는 부분적 재산에 대하여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보전 조치를 취한 관련 단위는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인식한 후 기업파산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지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 후부터 파산 선고전까지 파산 신청 기각 또는 기업파산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파산절차 종결 판정을 하는 경우, 즉시 원래 보전조치를 취하였다가 법에 따라 보전 조치를 해지한 단위에게 기존의 보전 순위에 따라 보전 조치를 회복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전 조치를 해지한 단위가 보전 조치를 회복하거나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겠다고 표명하기 전까지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1조와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재산 관련 행위 취소 및 상대자로부터 채무자 재산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의 착오로 인하여 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채무자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인의 당해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채무자가 행정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에 진입한 경우, 기업파산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취소행위가 가능한 기산점은 행정감독기구에서 취소 결정을 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채무자가 강제청산절차를 거쳐 파산절차에 진입한 경우, 기업파산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규정한 취소행위가 가능한 기산점은 인민법원에서 강제청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된 거래를 취소할 경우, 거래 쌍방은 응당 법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당해 거래 취소로 채무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대금 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파산 신청 접수 전 1년내에 채무자가 사전에 상환한 만기전 채무에 대하여 파산 신청 접수전에 이미 기한 만료가 되었으며 관리인이 당해 상환 행위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 한다. 단, 당해 상환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전 6개월내에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파산 신청 접수 후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무상양도한 재산, 확실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한 거래, 채권 포기 행위를 취소할 것을 청구하지 아니 할 경우, 채권자는 계약법 제74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상기 행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회수한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범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초과하였다고 상대자가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채무자가 사유 재산으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채권에 대해 개별 상환한 것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채무 상환시 담보재산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채무자가 소송, 중재, 집행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진행한 개별 상환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채무자와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기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행한 하기 개별 상환에 대하여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가 기본 생산 수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2）채무자가 노동 보수, 인신상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경우(3）채무자가 수익을 보는 기타 개별 상환 **제17조** 관리인이 기업파산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은닉, 이전한 실제 점유자가 채무자 재산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허구, 허위채무 인정 행위 무효 및 채무자 재산을 반환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18조**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기업파산법 제128조 규정에 근거, 채무자의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채무자 재산 관련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 재산 손실 초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기 책임자가 이에 해당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9조** 채무자가 대외채권을 향유하는 공소시효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하는 날부터 중단된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기된 채권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대외채권이 파산 신청 접수전 1년내 공소시효 기간 초과를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다시 상기 채권의 소송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제20조**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출자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또는 빼돌린 출자 원리금 반환을 주장하고 이에 출자자는 아직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출자 납입 기한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자의무 위반이 공소시효를 초과한 것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관리인이 회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발기인 및 주주 출자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출자 포탈을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 관리임원, 실제 통제인 등이 주주가 출자의무를 위반하거나 출자 포탈에 대한 관련 책임을 지고 당해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21조** 파산 신청 접수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하기 소송을 제기하고 파산 신청 접수 시 안건이 판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심사를 중지해야 한다. （1）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2）채무자의 출자자, 발기인 및 주주 출자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사, 고급 관리임원, 또는 출자 포탈을 협조한 기타 주주, 이사, 고급 관리임원, 실제 통제인 등이 직접 출자 부실 또는 출자 포탈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3）채무자의 주주와 채무자 법인 인격이 엄중히 혼동된 것을 이유로 채무자의 주주가 직접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채무를 상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4）기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제기한 개별 상환 소송 채무자가 파산 선고후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44조 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단, 채권자가 일심에서 소송사유를 추가 회수한 관련 재산을 채무자 재산에 귀속시킬 것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하기 전 인민법원이 기업파산법 제12조 또는 제108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하거나 파산절차를 종결하기로 판결한 경우, 상기 심사를 중지한 안건은 심사를 회복해야 한다. **제22조** 파산 신청 접수 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본 규정 제21조 제1항에 열거한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서 또는 조정서를 내렸으나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파산 신청 접수후 관련 집행 행위는 응당 기업파산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지해야 하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련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제23조** 파산 신청 접수 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본 규정 제21조 제1항에 열거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채권자가 채권자회의 또는 채권자위원회를 통해 관리인에게 제3채무자, 채무자의 출자자 등 순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거절하였으며 채권자회의에서 기업파산법 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관리인 교체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이 회수하지 아니하고 개별 채권자가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출자자 등이 채무자에게 상환 또는 채무자 재산을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공동 파산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24조**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임원이 직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아래 수입에 대해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36조에서 규정한 비 정상 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 (1）보너스(2）보편적으로 직원 임금 연체 상황에서 취득한 임금 수입(3）기타 비 정상 수입채무자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임원이 관리인에게 상기 채무자 재산을 반환하는것을 거절한데 대하여 관리인이 상기 인원이 반환할 것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임원이 제1항 제1호, 제3호 비 정상 수입 반환으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비 정상 수입 반환으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기업파산법 제113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부분은 체불한 종업원 임금을 변제하며 당해 기업 종업원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파산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제25조** 관리인이 채무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질물과 유치물을 회수하거나 질권자, 유치권자와 협상하여 질물,유치물을 할인하여 채무 변제를 하는 등 채권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 처분 행위를 진행할 경우, 즉시 채권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자위원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인은 즉시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권리자가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회수권을 행사할 경우 파산 재산 현금화 방안 또는 화해 합의, 정리절차 계획 초안을 채권자회의에 제출하여 표결하기 전에 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가 상기 기한 이후 관련 재산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회수권 행사 지연으로 인하여 증가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27조** 권리자가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인에게 회수권 행사를 주장하였으나 관리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 하여 권리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제소하여 회수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권리자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의 발효된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관리인에게 쟁의가 있는 재산 회수를 주장하고 관리인은 발효된 법률문서의 착오를 이유로 그 회수권 행사를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권리자가 회수권 행사 시 법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련 가공비, 보관비, 운송비, 위탁비, 대리판매비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관리인이 그 관련 재산 회수를 거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2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부패 화물 등 보관하기 어려운 재산 또는 즉시 가치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가치가 하락되는 재산에 대해 관리인이 즉시 현금화한 후 유관 권리자가 이에 대해 회수권을 행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30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위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가 물권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선의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 권리자가 동 재산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원 권리자가 당해 재산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2）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 권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제31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위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양도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권법 제106조 규정에 근거하여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원 권리자가 법에 따라 양도 재산을 회수할 경우 , 제3자가 기 지급한 양도대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2）양도 행위가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제32조**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의 회손, 멸실로 인하여 획득한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代償物**)이 채무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대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채무자 재산과 구분이 가능한 경우 권리자가 당해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 회수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보험금, 배상금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거나 대상물이 이미 채무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채무자 재산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재산 회손, 멸실이 파산 신청 접수이전에 발생한 경우 권리자가 재산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한다. (2）재산 회손, 멸실이 파산 신청 접수이후에 발생한 경우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채무자가 점유한 타인 재산이 회손, 멸실되었으나 이에 상응한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代償物**)을 획득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보험금, 배상금, **대상물이 당해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인민법원은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관리인 및 관련 인원이 직무 집행 과정중 고의적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재산을 부당하게 양도하거나 타인 재산의 회손, 멸실을 초래하여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채무자 재산으로 수시 변제하였으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으며 권리자가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에게 보충 보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상기 채무를 공익채무로 하여 채무자 재산으로 수시 변제 후 채권자가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의 부당한 직무 집행에 따른 채무자 재산 감소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인 또는 관련 인원이 이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질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4조**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약정한 표적물 소유권 유보 관련하여 표적물 소유권이 법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당해 매매계약 중 쌍방이 모두 이행을 필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해지 또는 계속 이행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35조** 매도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 매수인은 원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매도인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이미 표적물 대금의 75%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선의로 표적물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 제2항 규정으로 인하여 표적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도인의 관리인이 법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계속 지불, 기타 의무 이행 완료 및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6조** 매도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하고 기업파산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매매 표적물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법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매매 표적물을 매도인의 관리인에게 교부한 후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은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한다. 단,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매도인의 관리인이 상기 채권을 일반 파산채권으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37조** 매수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 원 매매계약중 약정한 매수인이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은 파산 신청 접수 시를 만기로 간주하며 매수인의 관리인은 응당 제때에 매도인에게 대금 지불 또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매수인의 관리인이 부당한 이유로 제때에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을 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매도인이 계약법 제134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단, 매수인이 이미 표적물 대금의 75% 이상을 지불하였거나 제3자가 선의로 표적물 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조 제2항 규정으로 인하여 표적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법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계속 지불, 기타 의무 이행 완료 및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표적물을 판매, 저당, 기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혀 형성된 채무에 대하여 매도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38조** 매수인이 파산하여 당해 관리인이 소유권 유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정하고 매도인이 기업파산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 표적물 회수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 표적물 회수에 대하여 매수인의 관리인이 기 지불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회수한 표적물 가치가 명확히 감소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기 지불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부분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매수인이 기 지불한 대금이 매도인 표적물 가치 손실로 인하여 형성된 채권을 보전하지 못하여 매도인이 공익채무로 하여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제39조** 매도인이 기업파산법 제39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송업자 또는 실제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운송 중지, 화물 반환, 도착지 변경 또는 화물을 기타 수하인에게 교부하는 등 방식으로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에 대해 회수권을 주장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화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관리인에게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 회수를 주장하였으며 매매 표적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한 후 매도인이 관리인에게 회수를 주장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매도인이 운송 도중에 있는 표적물에 대하여 제때에 회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매매 표적물이 관리인에게 도착한 후 관리인에게 운송도중에 있는 표적물 회수권을 행사한 경우 관리인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채무자가 정리절차 기간 중 권리자가 채무자의 합법적인 소유로 되어 있는 권리자의 재산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쌍방이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관리인 또는 자체로 재산을 관리하는 채무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재산이 양도, 회손, 멸실 또는 가치가 명확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경우 관리인에게 상계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인은 자발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지고 있는 채무를 상계해서는 아니 되나 상계로 인하여 채무자 재산이 수익을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관리인이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계는 관리인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리인이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약정한 이의 기한내 또는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내 인민법인에 제소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경과된 후 제소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에서 관리인이 제기한 상계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할 경우, 당해 상계는 관리인이 채무 상계를 주장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관리인이 아래 열거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1）파산 신청 접수 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 채무가 만기 도래하지 않은 경우(2）파산 신청 접수 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진 채무가 만기 도래하지 않은 경우(3）쌍방이 서로 지고 있는 채무 표적물 종류, 품질이 다른 경우 **제44조** 파산 신청 접수전 6개월내에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되고 채무자가 개별 채권자와 상계 방식으로 개별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진행하였으며 상계한 채권 채무가 기업파산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상황 중 하나에 해당, 관리인이 파산 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하여 당해 상계 무효를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45조** 기업파산법 제40조에서 열거한 상계가 불가한 채권자가 자신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지 않는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 이에 채무자의 관리인이 당해 상계가 기업파산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상황이라고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상계에 사용된 채권이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채무자의 주주가 아래 열거한 채무와 채무자가 자신에게 진 채무를 상계할 것을 주장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채무자의 주주가 채무자의 출자금 미납 또는 자금 포탈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진 채무(2）채무자의 주주가 주주 권리 또는 관련 관계를 남용, 회사의 이익을 손상하여 채무자에게 진 채무**제47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 후 당사자가 제기한 채무자 관련 민사 소송 안건은 기업파산법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인에서 관할한다.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 채무자 관련 일심 민사안건은 민사소송법 제38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급 인민법원에서 재판하거나 또는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하급 인민법원에 이양하여 심리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해상 분쟁, 특허 분쟁, 증권시장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배상 분쟁 등 안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7조 규정에 근거하여 상급 인민법원에서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기업파산 관련 사법해석 중 본 규정과 저촉될 경우에는 본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若干问题的规定（二）**法释〔2013〕22号，2013年9月12日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破产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等相关法律，结合审判实践，就人民法院审理企业破产案件中认定债务人财产相关的法律适用问题，制定本规定。　　**第一条** 除债务人所有的货币、实物外，债务人依法享有的可以用货币估价并可以依法转让的债权、股权、知识产权、用益物权等财产和财产权益，人民法院均应认定为债务人财产。　　**第二条** 下列财产不应认定为债务人财产：　　（一）债务人基于仓储、保管、承揽、代销、借用、寄存、租赁等合同或者其他法律关系占有、使用的他人财产；　　（二）债务人在所有权保留买卖中尚未取得所有权的财产；　　（三）所有权专属于国家且不得转让的财产；　　（四）其他依照法律、行政法规不属于债务人的财产。　　**第三条** 债务人已依法设定担保物权的特定财产，人民法院应当认定为债务人财产。　　对债务人的特定财产在担保物权消灭或者实现担保物权后的剩余部分，在破产程序中可用以清偿破产费用、共益债务和其他破产债权。　　**第四条** 债务人对按份享有所有权的共有财产的相关份额，或者共同享有所有权的共有财产的相应财产权利，以及依法分割共有财产所得部分，人民法院均应认定为债务人财产。　　人民法院宣告债务人破产清算，属于共有财产分割的法定事由。人民法院裁定债务人重整或者和解的，共有财产的分割应当依据物权法第九十九条的规定进行；基于重整或者和解的需要必须分割共有财产，管理人请求分割的，人民法院应予准许。　　因分割共有财产导致其他共有人损害产生的债务，其他共有人请求作为共益债务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五条** 破产申请受理后，有关债务人财产的执行程序未依照企业破产法第十九条的规定中止的，采取执行措施的相关单位应当依法予以纠正。依法执行回转的财产，人民法院应当认定为债务人财产。　　**第六条** 破产申请受理后，对于可能因有关利益相关人的行为或者其他原因，影响破产程序依法进行的，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可以根据管理人的申请或者依职权，对债务人的全部或者部分财产采取保全措施。　　**第七条** 对债务人财产已采取保全措施的相关单位，在知悉人民法院已裁定受理有关债务人的破产申请后，应当依照企业破产法第十九条的规定及时解除对债务人财产的保全措施。　　**第八条**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至破产宣告前裁定驳回破产申请，或者依据企业破产法第一百零八条的规定裁定终结破产程序的，应当及时通知原已采取保全措施并已依法解除保全措施的单位按照原保全顺位恢复相关保全措施。　　在已依法解除保全的单位恢复保全措施或者表示不再恢复之前，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不得解除对债务人财产的保全措施。　　**第九条** 管理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一条和第三十二条的规定提起诉讼，请求撤销涉及债务人财产的相关行为并由相对人返还债务人财产的，人民法院应予支持。　　管理人因过错未依法行使撤销权导致债务人财产不当减损，债权人提起诉讼主张管理人对其损失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条** 债务人经过行政清理程序转入破产程序的，企业破产法第三十一条和第三十二条规定的可撤销行为的起算点，为行政监管机构作出撤销决定之日。　　债务人经过强制清算程序转入破产程序的，企业破产法第三十一条和第三十二条规定的可撤销行为的起算点，为人民法院裁定受理强制清算申请之日。　　**第十一条** 人民法院根据管理人的请求撤销涉及债务人财产的以明显不合理价格进行的交易的，买卖双方应当依法返还从对方获取的财产或者价款。　　因撤销该交易，对于债务人应返还受让人已支付价款所产生的债务，受让人请求作为共益债务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二条** 破产申请受理前一年内债务人提前清偿的未到期债务，在破产申请受理前已经到期，管理人请求撤销该清偿行为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该清偿行为发生在破产申请受理前六个月内且债务人有企业破产法第二条第一款规定情形的除外。　　**第十三条** 破产申请受理后，管理人未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一条的规定请求撤销债务人无偿转让财产、以明显不合理价格交易、放弃债权行为的，债权人依据合同法第七十四条等规定提起诉讼，请求撤销债务人上述行为并将因此追回的财产归入债务人财产的，人民法院应予受理。　　相对人以债权人行使撤销权的范围超出债权人的债权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十四条** 债务人对以自有财产设定担保物权的债权进行的个别清偿，管理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二条的规定请求撤销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债务清偿时担保财产的价值低于债权额的除外。　　**第十五条** 债务人经诉讼、仲裁、执行程序对债权人进行的个别清偿，管理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二条的规定请求撤销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债务人与债权人恶意串通损害其他债权人利益的除外。　　**第十六条** 债务人对债权人进行的以下个别清偿，管理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二条的规定请求撤销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债务人为维系基本生产需要而支付水费、电费等的；　　（二）债务人支付劳动报酬、人身损害赔偿金的；　　（三）使债务人财产受益的其他个别清偿。　　**第十七条** 管理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三条的规定提起诉讼，主张被隐匿、转移财产的实际占有人返还债务人财产，或者主张债务人虚构债务或者承认不真实债务的行为无效并返还债务人财产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八条** 管理人代表债务人依据企业破产法第一百二十八条的规定，以债务人的法定代表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对所涉债务人财产的相关行为存在故意或者重大过失，造成债务人财产损失为由提起诉讼，主张上述责任人员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九条** 债务人对外享有债权的诉讼时效，自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之日起中断。　　债务人无正当理由未对其到期债权及时行使权利，导致其对外债权在破产申请受理前一年内超过诉讼时效期间的，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之日起重新计算上述债权的诉讼时效期间。　　**第二十条** 管理人代表债务人提起诉讼，主张出资人向债务人依法缴付未履行的出资或者返还抽逃的出资本息，出资人以认缴出资尚未届至公司章程规定的缴纳期限或者违反出资义务已经超过诉讼时效为由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管理人依据公司法的相关规定代表债务人提起诉讼，主张公司的发起人和负有监督股东履行出资义务的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协助抽逃出资的其他股东、董事、高级管理人员、实际控制人等，对股东违反出资义务或者抽逃出资承担相应责任，并将财产归入债务人财产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一条** 破产申请受理前，债权人就债务人财产提起下列诉讼，破产申请受理时案件尚未审结的，人民法院应当中止审理：　　（一）主张次债务人代替债务人直接向其偿还债务的；　　（二）主张债务人的出资人、发起人和负有监督股东履行出资义务的董事、高级管理人员，或者协助抽逃出资的其他股东、董事、高级管理人员、实际控制人等直接向其承担出资不实或者抽逃出资责任的；　　（三）以债务人的股东与债务人法人人格严重混同为由，主张债务人的股东直接向其偿还债务人对其所负债务的；　　（四）其他就债务人财产提起的个别清偿诉讼。　　债务人破产宣告后，人民法院应当依照企业破产法第四十四条的规定判决驳回债权人的诉讼请求。但是，债权人一审中变更其诉讼请求为追收的相关财产归入债务人财产的除外。　　债务人破产宣告前，人民法院依据企业破产法第十二条或者第一百零八条的规定裁定驳回破产申请或者终结破产程序的，上述中止审理的案件应当依法恢复审理。　　**第二十二条** 破产申请受理前，债权人就债务人财产向人民法院提起本规定第二十一条第一款所列诉讼，人民法院已经作出生效民事判决书或者调解书但尚未执行完毕的，破产申请受理后，相关执行行为应当依据企业破产法第十九条的规定中止，债权人应当依法向管理人申报相关债权。　　**第二十三条** 破产申请受理后，债权人就债务人财产向人民法院提起本规定第二十一条第一款所列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债权人通过债权人会议或者债权人委员会，要求管理人依法向次债务人、债务人的出资人等追收债务人财产，管理人无正当理由拒绝追收，债权人会议依据企业破产法第二十二条的规定，申请人民法院更换管理人的，人民法院应予支持。　　管理人不予追收，个别债权人代表全体债权人提起相关诉讼，主张次债务人或者债务人的出资人等向债务人清偿或者返还债务人财产，或者依法申请合并破产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二十四条** 债务人有企业破产法第二条第一款规定的情形时，债务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利用职权获取的以下收入，人民法院应当认定为企业破产法第三十六条规定的非正常收入：　　（一）绩效奖金；　　（二）普遍拖欠职工工资情况下获取的工资性收入；　　（三）其他非正常收入。　　债务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拒不向管理人返还上述债务人财产，管理人主张上述人员予以返还的，人民法院应予支持。　　债务人的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因返还第一款第（一）项、第（三）项非正常收入形成的债权，可以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因返还第一款第（二）项非正常收入形成的债权，依据企业破产法第一百一十三条第三款的规定，按照该企业职工平均工资计算的部分作为拖欠职工工资清偿；高出该企业职工平均工资计算的部分，可以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　　**第二十五条** 管理人拟通过清偿债务或者提供担保取回质物、留置物，或者与质权人、留置权人协议以质物、留置物折价清偿债务等方式，进行对债权人利益有重大影响的财产处分行为的，应当及时报告债权人委员会。未设立债权人委员会的，管理人应当及时报告人民法院。　　**第二十六条** 权利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八条的规定行使取回权，应当在破产财产变价方案或者和解协议、重整计划草案提交债权人会议表决前向管理人提出。权利人在上述期限后主张取回相关财产的，应当承担延迟行使取回权增加的相关费用。　　**第二十七条** 权利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八条的规定向管理人主张取回相关财产，管理人不予认可，权利人以债务人为被告向人民法院提起诉讼请求行使取回权的，人民法院应予受理。　　权利人依据人民法院或者仲裁机关的相关生效法律文书向管理人主张取回所涉争议财产，管理人以生效法律文书错误为由拒绝其行使取回权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二十八条** 权利人行使取回权时未依法向管理人支付相关的加工费、保管费、托运费、委托费、代销费等费用，管理人拒绝其取回相关财产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九条** 对债务人占有的权属不清的鲜活易腐等不易保管的财产或者不及时变现价值将严重贬损的财产，管理人及时变价并提存变价款后，有关权利人就该变价款行使取回权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条** 债务人占有的他人财产被违法转让给第三人，依据物权法第一百零六条的规定第三人已善意取得财产所有权，原权利人无法取回该财产的，人民法院应当按照以下规定处理：　　（一）转让行为发生在破产申请受理前的，原权利人因财产损失形成的债权，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　　（二）转让行为发生在破产申请受理后的，因管理人或者相关人员执行职务导致原权利人损害产生的债务，作为共益债务清偿。　　**第三十一条** 债务人占有的他人财产被违法转让给第三人，第三人已向债务人支付了转让价款，但依据物权法第一百零六条的规定未取得财产所有权，原权利人依法追回转让财产的，对因第三人已支付对价而产生的债务，人民法院应当按照以下规定处理：　　（一）转让行为发生在破产申请受理前的，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　　（二）转让行为发生在破产申请受理后的，作为共益债务清偿。　　**第三十二条** 债务人占有的他人财产毁损、灭失，因此获得的保险金、赔偿金、代偿物尚未交付给债务人，或者代偿物虽已交付给债务人但能与债务人财产予以区分的，权利人主张取回就此获得的保险金、赔偿金、代偿物的，人民法院应予支持。　　保险金、赔偿金已经交付给债务人，或者代偿物已经交付给债务人且不能与债务人财产予以区分的，人民法院应当按照以下规定处理：　　（一）财产毁损、灭失发生在破产申请受理前的，权利人因财产损失形成的债权，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　　（二）财产毁损、灭失发生在破产申请受理后的，因管理人或者相关人员执行职务导致权利人损害产生的债务，作为共益债务清偿。　　债务人占有的他人财产毁损、灭失，没有获得相应的保险金、赔偿金、代偿物，或者保险金、赔偿物、代偿物不足以弥补其损失的部分，人民法院应当按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理。　　**第三十三条** 管理人或者相关人员在执行职务过程中，因故意或者重大过失不当转让他人财产或者造成他人财产毁损、灭失，导致他人损害产生的债务作为共益债务，由债务人财产随时清偿不足弥补损失，权利人向管理人或者相关人员主张承担补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上述债务作为共益债务由债务人财产随时清偿后，债权人以管理人或者相关人员执行职务不当导致债务人财产减少给其造成损失为由提起诉讼，主张管理人或者相关人员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四条** 买卖合同双方当事人在合同中约定标的物所有权保留，在标的物所有权未依法转移给买受人前，一方当事人破产的，该买卖合同属于双方均未履行完毕的合同，管理人有权依据企业破产法第十八条的规定决定解除或者继续履行合同。　　**第三十五条** 出卖人破产，其管理人决定继续履行所有权保留买卖合同的，买受人应当按照原买卖合同的约定支付价款或者履行其他义务。　　买受人未依约支付价款或者履行完毕其他义务，或者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给出卖人造成损害，出卖人管理人依法主张取回标的物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是，买受人已经支付标的物总价款百分之七十五以上或者第三人善意取得标的物所有权或者其他物权的除外。　　因本条第二款规定未能取回标的物，出卖人管理人依法主张买受人继续支付价款、履行完毕其他义务，以及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六条** 出卖人破产，其管理人决定解除所有权保留买卖合同，并依据企业破产法第十七条的规定要求买受人向其交付买卖标的物的，人民法院应予支持。　　买受人以其不存在未依约支付价款或者履行完毕其他义务，或者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情形抗辩的，人民法院不予支持。　　买受人依法履行合同义务并依据本条第一款将买卖标的物交付出卖人管理人后，买受人已支付价款损失形成的债权作为共益债务清偿。但是，买受人违反合同约定，出卖人管理人主张上述债权作为普通破产债权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七条** 买受人破产，其管理人决定继续履行所有权保留买卖合同的，原买卖合同中约定的买受人支付价款或者履行其他义务的期限在破产申请受理时视为到期，买受人管理人应当及时向出卖人支付价款或者履行其他义务。　　买受人管理人无正当理由未及时支付价款或者履行完毕其他义务，或者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给出卖人造成损害，出卖人依据合同法第一百三十四条等规定主张取回标的物的，人民法院应予支持。但是，买受人已支付标的物总价款百分之七十五以上或者第三人善意取得标的物所有权或者其他物权的除外。　　因本条第二款规定未能取回标的物，出卖人依法主张买受人继续支付价款、履行完毕其他义务，以及承担相应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对因买受人未支付价款或者未履行完毕其他义务，以及买受人管理人将标的物出卖、出质或者作出其他不当处分导致出卖人损害产生的债务，出卖人主张作为共益债务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第三十八条** 买受人破产，其管理人决定解除所有权保留买卖合同，出卖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八条的规定主张取回买卖标的物的，人民法院应予支持。　　出卖人取回买卖标的物，买受人管理人主张出卖人返还已支付价款的，人民法院应予支持。取回的标的物价值明显减少给出卖人造成损失的，出卖人可从买受人已支付价款中优先予以抵扣后，将剩余部分返还给买受人；对买受人已支付价款不足以弥补出卖人标的物价值减损损失形成的债权，出卖人主张作为共益债务清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十九条** 出卖人依据企业破产法第三十九条的规定，通过通知承运人或者实际占有人中止运输、返还货物、变更到达地，或者将货物交给其他收货人等方式，对在运途中标的物主张了取回权但未能实现，或者在货物未达管理人前已向管理人主张取回在运途中标的物，在买卖标的物到达管理人后，出卖人向管理人主张取回的，管理人应予准许。　　出卖人对在运途中标的物未及时行使取回权，在买卖标的物到达管理人后向管理人行使在运途中标的物取回权的，管理人不应准许。　　**第四十条** 债务人重整期间，权利人要求取回债务人合法占有的权利人的财产，不符合双方事先约定条件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因管理人或者自行管理的债务人违反约定，可能导致取回物被转让、毁损、灭失或者价值明显减少的除外。　　**第四十一条** 债权人依据企业破产法第四十条的规定行使抵销权，应当向管理人提出抵销主张。　　管理人不得主动抵销债务人与债权人的互负债务，但抵销使债务人财产受益的除外。　　**第四十二条** 管理人收到债权人提出的主张债务抵销的通知后，经审查无异议的，抵销自管理人收到通知之日起生效。　　管理人对抵销主张有异议的，应当在约定的异议期限内或者自收到主张债务抵销的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无正当理由逾期提起的，人民法院不予支持。　　人民法院判决驳回管理人提起的抵销无效诉讼请求的，该抵销自管理人收到主张债务抵销的通知之日起生效。　　**第四十三条** 债权人主张抵销，管理人以下列理由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　　（一）破产申请受理时，债务人对债权人负有的债务尚未到期；　　（二）破产申请受理时，债权人对债务人负有的债务尚未到期；　　（三）双方互负债务标的物种类、品质不同。　　**第四十四条** 破产申请受理前六个月内，债务人有企业破产法第二条第一款规定的情形，债务人与个别债权人以抵销方式对个别债权人清偿，其抵销的债权债务属于企业破产法第四十条第（二）、（三）项规定的情形之一，管理人在破产申请受理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主张该抵销无效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四十五条** 企业破产法第四十条所列不得抵销情形的债权人，主张以其对债务人特定财产享有优先受偿权的债权，与债务人对其不享有优先受偿权的债权抵销，债务人管理人以抵销存在企业破产法第四十条规定的情形提出异议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是，用以抵销的债权大于债权人享有优先受偿权财产价值的除外。　　**第四十六条** 债务人的股东主张以下列债务与债务人对其负有的债务抵销，债务人管理人提出异议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债务人股东因欠缴债务人的出资或者抽逃出资对债务人所负的债务；　　（二）债务人股东滥用股东权利或者关联关系损害公司利益对债务人所负的债务。　　**第四十七条** 人民法院受理破产申请后，当事人提起的有关债务人的民事诉讼案件，应当依据企业破产法第二十一条的规定，由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管辖。　　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管辖的有关债务人的第一审民事案件，可以依据民事诉讼法第三十八条的规定，由上级人民法院提审，或者报请上级人民法院批准后交下级人民法院审理。　　受理破产申请的人民法院，如对有关债务人的海事纠纷、专利纠纷、证券市场因虚假陈述引发的民事赔偿纠纷等案件不能行使管辖权的，可以依据民事诉讼法第三十七条的规定，由上级人民法院指定管辖。　　**第四十八条** 本规定施行前本院发布的有关企业破产的司法解释，与本规定相抵触的，自本规定施行之日起不再适用。 |